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9. 13. 인요한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9. 19.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1.1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2025.11.26.)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인요한의원)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음.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대응하여 강화하고자 함(안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및 제348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 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형벌체계의 균형을 이루고 사기범죄를 예방 또는 억제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변동없이 유지되어 온 것과 달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²⁾ 등 형사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수한 유형의 사기범죄에 대한 법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2014. 1. 28. 신설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2023. 5. 16. 개정을 통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 가능)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였음.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2016. 3. 29. 제정 당시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고, 2024. 2. 13.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정형을 강화해온 점을 고려하여,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 강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김용민위원)

집단적·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